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에 대한 의견조사(참여자)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원에서는 올해 『부산지역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의 성과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이혼위기 및 이혼과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 연구책임 :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연구위원 / 이은지 전문연구원

■ 연 락 처 : 051) 330-3430 / 330-3425

I. 응답자 특성

SQ1. 소속지역

- | | | | | | |
|-------|-------|--------|-------|--------|-------|
| ① 중구 | ② 서구 | ③ 동구 | ④ 영도구 | ⑤ 부산진구 | ⑥ 동래구 |
| ⑦ 남구 | ⑧ 북구 | ⑨ 해운대구 | ⑩ 사하구 | ⑪ 금정구 | ⑫ 강서구 |
| ⑬ 연제구 | ⑭ 수영구 | ⑮ 사상구 | ⑯ 기장군 | | |

SQ2. 성별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

SQ3. 연령

- | | | | | |
|-------|-------|-------|-------|----------|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
|-------|-------|-------|-------|----------|

Q4. 귀하께서 이혼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자녀문제 ② 경제적 문제 ③ 사회적 편견
 ④ 신념 혹은 종교 ⑤ 법적 문제 ⑥ 기타()

Q5. 배우자와 현재까지 합의한 것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문 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친권자·양육자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위자료·재산분할	①	②	③	④	⑤
3) 양육비 지급액	①	②	③	④	⑤
4) 양육비 지급 방식	①	②	③	④	⑤
5) 면접교섭의 행사여부 및 방법	①	②	③	④	⑤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이혼 전까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 등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가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Q6. 귀하는 이혼숙려기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 ① 이혼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민 ② 자녀 양육대책에 관한 심사숙고
 ③ 이혼관련 정보(법적 내용 등) 수집 ④ 주변사람들과 이혼에 대한 상의
 ⑤ 전문 상담가와 상담 ⑥ 이혼과 특별한 관련없이 시간을 보냄
 ⑦ 기타()

Q7. 이혼숙려기간이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문 항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전반적인 도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1)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이혼 후 생계 등에 관해 심사숙고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의 복리와 권익보호(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①	②	③	④	⑤
4) 부부 간 원만한 합의도출(위자료, 재산분할 등)	①	②	③	④	⑤
5) 심리, 정서적 안정	①	②	③	④	⑤

Q8. 귀하는 이혼숙려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간이 적절함 ☞ Q9로 이동 ② 현행보다 단축되어야 함 ☞ Q8-1로 이동
 ③ 현행보다 연장되어야 함 ☞ Q8-1로 이동 ④ 숙려기간이 불필요함 ☞ Q8-1로 이동

Q8-1. (Q8 ②~④번 응답자만) 그렇게 생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Q9. 귀하는 이혼숙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혼숙려기간 중 상담의무화 ② 전문상담기관의 교육
 ③ 상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④ 상담 및 프로그램 이수 시 숙려기간 단축
 ⑤ 기타()

Q10. 귀하는 향후 협의이혼을 철회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Q11. 자녀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Q12.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누구로 협의하셨습니까? ()

Q13. 이혼전후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 항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의무상담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교육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최저양육비 기준 등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양육비 불이행 시 강제집행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6) 면접교섭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Ⅲ.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활성화 방안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의무상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 의무상담이 어려운 당사자들 위해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캠프, 집단교육, 부모교육에 참석하면 의무상담을 받은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Q14.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의무상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Q15. 귀하께서 이용하신 의무상담 및 프로그램 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함)

- ① 전문상담위원의 의무상담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협력적 부모역할)
-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집단상담(부부이해하기)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녀집단상담(자녀마음알기)
- ⑤ 기타()

Q16. 귀하께서 받은 의무상담 및 프로그램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전반적인 도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1) 이혼관련 절차 및 법률에 관한 정보 취득	①	②	③	④	⑤
2)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 협의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	①	②	③	④	⑤
4) 의사소통 방법 및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자녀 양육 방법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양육에 관한 협력적 부모역할 수행	①	②	③	④	⑤
7) 이혼 후 관계 및 생활 변화에 대한 준비	①	②	③	④	⑤

Q17.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의무상담 및 프로그램 회기와 시간은 무엇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적정회기					총 소요시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이상	
1) 의무상담 (Q15 ① 응답자)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교육 (Q15 ② 응답자)	①	②	③	④	⑤	
3) 부모 집단상담 (Q15 ③ 응답자)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집단상담 (Q15 ④ 응답자)	①	②	③	④	⑤	

Q18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의무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도움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이혼에 따른 절차 및 법률문제 안내 | ② 자녀양육협의서 작성 조력 |
| ③ 부부 간 의견차이 조정 및 화해 중재 | ④ 부부갈등 해결방법 |
| ⑤ 자녀 양육 방법 | ⑥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친밀감 향상 |
| ⑦ 이혼과정 또는 이혼 후의 정서적 문제 해결 | ⑧ 이혼 후 관계 및 생활 변화에 대한 재설계 |
| ⑨ 적절한 상담기관 안내 | ⑩ 기타() |

Q19.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신청자에 대해 상담 및 프로그램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신청자에게 상담 및 프로그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다 |
| ⑤ 매우 필요하다 | |

Q20. 귀하는 법원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후속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없다 ➡ Q20-1 이동 | ② 있다 ➡ Q20-2 이동 |
|-----------------|-----------------|

Q20-1. (Q20 ① 응답자만)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어려움 없음 | ②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
| ③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 ④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 ⑤ 귀찮아서 | 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 ⑦ 기타() | |

Q20-2. (Q20 ② 응답자만)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으십니까?

- | | |
|-------------|-----------|
| ① 개인상담 | ② 부부상담 |
| ③ 자녀상담 | ④ 부모교육 |
| ⑤ 부모 집단상담 | ⑥ 한부모가족교육 |
| ⑦ 면접교섭 프로그램 | ⑧ 가족캠프 |

Q20-3. (Q20-2 ⑦ 응답자만) 면접교섭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가족캠프 | ② 문화체험 프로그램 |
| ③ 자녀양육 코칭 | ④ 기타() |

Q21. 법원에서 제공하는 의무상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캠프, 집단상담,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이혼에 따른 절차 및 법률문제 안내 | ②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 협의 |
| ③ 부부 간 의견차이 조정 및 화해 중재 | ④ 부부갈등 해결방법 |
| ⑤ 자녀 양육 방법 | ⑥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친밀감 향상 |
| ⑦ 자녀양육에 관한 협력적 부모역할 수행 | ⑧ 이혼과정 또는 이혼 후의 정서적 문제 해결 |
| ⑨ 이혼 후 관계 및 생활 변화에 대한 재설계 | ⑩ 적절한 상담기관 안내 |
| ⑪ 기타() | |

Q22. 현행 이혼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이혼 당사자에 대한 상담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2) 상담제도의 적극적 홍보	①	②	③	④	⑤
3) 상담위원 및 강사의 자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상담기관의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6) 이혼안내 담당직원의 적극적 의지	①	②	③	④	⑤
7) 담당판사의 적극적 권고	①	②	③	④	⑤
8) 법원장의 적극적 의지	①	②	③	④	⑤
9)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공유의 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10)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원과의 유기적 연계	①	②	③	④	⑤

Q23.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Q24. 협의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귀하의 고견을 적어주십시오

--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